



# 서울교육대학교 - 육군사관학교 교류협력에 관한 협약서



서울교육대학교와 육군사관학교(이하 “양교” 라 한다)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## 제1조(목적)

본 협약은 양교가 가진 핵심 역량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교육·연구 등의 분야에서 교류를 증진하여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(협력내용)

양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서로 협력한다.

1. 교수(교직원) 및 생도(학생) 상호 교류
2. 관심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및 학술회 공동 개최
3. 학술자료, 출판물 및 정보의 상호 교환
4. 교육 및 복지 시설물의 상호 이용
5. 기타 상호 교류 협력이 필요한 사항

## 제3조(협약의 이행)

위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세부사항은 양교의 학칙 및 규정에 따르며,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.

## 제4조(비밀유지)

양교는 협약의 체결과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사항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본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같다.

## 제5조(효력 및 유효기간)

본 협약은 서명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며, 본 협약서의 유효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최초 3년으로 한다.

## 제6조(협약의 해지)

- ① 양교는 본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협약을 해지할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만료일로부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.
- ② 양교는 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2년 3월 17일

서울교육대학교

육군사관학교

임채성

강창구

총장 임채성

학교장 중장 강창구